

교원업적평가규정

- 제 정: 1996. 05. 01
- 개 정: 1997. 01. 01
- 개 정: 2005. 03. 01
- 개 정: 2006. 06. 30
- 개 정: 2007. 10. 15
- 개 정: 2009. 05. 01
- 개 정: 2010. 05. 01
- 개 정: 2014. 12. 01
- 개 정: 2016. 08. 01
- 개 정: 2017.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역량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 영역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수의 학술활동을 장려하여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 및 비정년 트랙의 모든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휴직 중인 교원은 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의 업적을 휴직기간 종료 후의 업적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원칙) 업적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의 계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의 영역 전체를 포괄하며, 이를 위해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되,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구성은 학문분야별, 평가영역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업적평가대상기간) 상반기 업적평가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해당년도 4월 30일까지의 업적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하반기 업적평가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상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 기간의 실적을 4월 30일까지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고, 하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 기간의 실적을 10월 31일까지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유관부서는 평가대상 교원의 업적평가대상 기간 내의 교육, 산학협력 및 봉사영역에 관한 평가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전산입력을 완료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표’ 및 ‘교원업적평가보조표’를 전산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과)장 및 학장을 통하여 평가실에 제출한다.
- ④ 위원회는 업적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업적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관리하며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 ⑥ 교원업적평가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원업적평가 절차

구 분	내 용	주 관
1. 전산 입력	-본교 포털사이트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영역 해당 항목 전산 입력	교원
2. 전산 입력	-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 전산 입력	교원업적평가 유관부서
3. 업적평가자료 제출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보조표는 전산출력 후 업적 증빙 자료와 함께 학부(과)장 및 학장을 통하여 평가실로 제출	교원 → 학부(과)장 → 학장 → 평가실
4. 위원회 검증 및 평가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업적 검증 및 평가 실시 -평가 완료된 업적평가표 전산 수정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보조표, 증빙자료 확인	위원회
5. 업적평가표 제출	-교원업적평가표 확인 날인 후 교원인사위원회로 제출	위원회 → 교원인사위원회

제7조(이의 신청)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 및 재심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참고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승진 및 승급, 정년보장 심사, 교내연구비의 지급, 연구년교원 선정, 책임시간 조정, 연봉계약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 업적이 탁월한 교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우수교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및 평가결과 비공개)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였던 자, 재심 신청자 등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업적평가

제10조(평가영역과 영역별 평가요소)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영역에 대해 시행한다.

- ① 교육영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수업, 실습 및 실기)활동 및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교육 참여도, 강의평가, 학생지도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② 연구영역은 해당 전공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의미하며, 논문·저서·학술활동 등을 비롯한 제반 연구 활동의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영역은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연구개발, 산학협력 관련사업의 유치 또는 운영, 수익사업, 인력양성, 기업체 자문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지적재산권, 외부연구비 수주, 학생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산학연계 인력양성, 학생 취업을 위한 활동 등의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④ 봉사영역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교내외에 제공·기여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며, 대외 봉사 관련 수상실적, 교내외 봉사업적 및 학부(과)(부서), 학술분야봉사, 대학발전 참여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중점평가유형) ① 교원은 임용 당시에 정한 중점기여영역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평가유형이 정해지며, 해당유형별로 중점영역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수업적점수와 요건이 부여될 수 있다. 모든 교원은 각각의 평가영역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영역별 성과와 기여도를 평가받는다.

<표 2> 교원업적평가유형 및 중점기여영역

평가영역 평가유형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표준형	-	-	-	-
강의전담형	중점영역		-	-
연구중점형	-	중점영역		-
산학협력중점형	-	-	중점영역	-

- ② 임용 당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재임용 평가까지는 연구중점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호봉제 교원은 표준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계열 구분) ① 교원의 업적평가 계열 구분은 <표 3>과 같다.

- 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명시되지 않은 기관 소속 교원은 본인의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의 학문분야를 적용한다.
- ③ 연구영역 평가 계열 및 전공분야별 필수요건
 -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Thomson Reuters사에 등재된 SCI, SCI(E), SSCI, A&HCI 저널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한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필수요건으로 적용한다.
 - 예체능계열은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 해당 논문발표실적이나 국제·국내 전문으로 인정 받은 공연·전시·상영작품을 연구필수요건으로 적용한다.

<표 3> 계열 구분

계열 구분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

제 3 장 영역별 평가기준

제13조(교육영역) 교육영역 평가는 교원의 강의 및 학생지도 전반에 걸친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와 같다.

제14조(연구영역) 연구영역 평가는 교원의 논문발표 및 저술, 학술활동과 창작발표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연구실적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각 등급별 실적물은 각 영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별표 8>과 같다.

제15조(산학협력영역) 산학협력영역 평가는 교원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6조(봉사영역) 봉사영역 평가는 교원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전문영역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 또는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 전반에 대한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개인적 활동은 제외한다. 봉사영역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7조(연구필수요건 대체인정) ① 강의전담형 교원은 교육영역에서 책임시수 초과점수와 강의 개발 및 강의공개 항목에서의 취득점수를 연구필수요건 국내A급 논문점수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연구영역의 우수도서는 1권에 한하여 연구필수요건 국내A급 논문점수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산학협력영역 <별표 9>의 해설 1)에서 지정된 교원 개인별 취득점수는 연구필수요건 점수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점수는 국제A-SCI급 단독저자 0.7편 이하로 제한한다.

④ 교내 행정봉사점수는 연구필수요건 국내A급 논문점수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학사관리의 성실도 및 징계 및 근무성실도에 관한 평가) ① 학사관리의 성실도 및 징계는 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학사관리의 성실도 및 징계 <별표 11>과 관련하여, 감점사유가 발생하면 총점에서 차감하나 평가 등을 위해 영역배점이 불가피한 경우는 우선 차감 반영 영역을 1. 봉사, 2. 교육, 3. 연구, 4. 산학협력 순으로 한다.

③ 근무성실도 평가는 <별표 12>와 같이 근무성실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다면평가로 평가한다.

<별표 1> 교육영역 세부항목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및 인정점수	연간상한점수	비고
------	----	-------------	--------	----

강의	담당시수	책임시수 기본, 대학원 시수인정	54	1)
		책임시수 초과(미달): 시수 당 × 3(-3)점	54	
	강의평가	학생강의평가 점수 = 획득점수 × 4 *수강생 5명이하 과목 강의평가는 평균에서 제외	20	2)
	대형강의	강의규모 80명 이상, 강좌 당 2점	8	3)
	원어강의	원어강의 학점 당 2점	12	4)
	강의우수	강의 우수교수 선정 10점	10	5)
	열린교양 강좌	건당 4점	8	6)
교내 논문지도	석사 박사	건당 3점	15	-
		건당 6점	-	
강의개발	신규 교과목 개발, 연계/융합전공 개발, Flipped learning 개발, 강의용 홈페이지 개발 (건당 10점)		20	8)
강의코디	융복합과목 강의 팀티칭 코디네이터 5점(학기당 1과목만 인정)		10	9)
강의공개	K-MOOC/G-MOOC 강의동영상 공개 (과목당 40점, 동영상 미포함 20점)		80	10)
	KOCW 강의동영상 공개, 사이버 강의 (과목당 30점, 동영상 미포함 15점)		60	
	강의녹화(학점당 1점) 및 강의녹화공개(학점당 1.5점)		-	
교수역량 개발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법 워크숍 참여 (건당 2점, 필수 제외)		4	11)
	교수학습개발센터 등 강의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건당 2점)		4	
	수업컨설팅 참여 (4점)		4	
학생지도	학사지도 상담 (학기당 2점)		4	12)
	학생지원처에 등록된 동아리 지도교수 (동아리 1건 당 2점)		2	
	교내·외 학생행사 현장지도 (건당 2점)		8	
	해외연수(MOU에 의한 국제학생교류)/봉사인솔지도 (건당 4점)		8	
	교외 봉사활동 인솔 (건당 2점)		8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공모전 수상 (건당 5점)		10	
	기타 학생지도 위한 노력	공모전 참여 (건당 1점)		
특강 (건당 2점)				
수업 외(과외) 전공지도 (건당 3점)				

1) 담당시수 : 책임시수 초과하는 강의시수 당 3점 최대 54점까지 인정하며 연구년이나 파견기간 동안의 평가는 직전학기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담당시수는 이론·실험·실습·실기 구분 없이 주당시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 교과목을 다수의 교수가 담당한 과목(팀티칭)의 경우 실시간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강의평가 점수 : 획득점수 × 4

5명 이하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는 제외하고, 강의평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열별 평균값을 부여한다.

- 3) 대형강의 : 강의규모 80명 이상 강좌당 2점 최대 8점
- 4) 원어강의 : 학점당 2점 최대 12점(외국인 및 원어강의 의무시수에 포함된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 5) 강의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취득하여 교무과에서 강의우수 교원으로 선정한 경우 점수 부여.
- 6) 교양대학에서 실시하는 열린 교양강좌를 강의한 교원에게 점수 부여.
- 7) 강의교과목에 대해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양식에 의거하여 충실하게 작성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학기말에 제출한 교원에 대해 교과목당 2점 부여.
- 8) 강의개발
 - ① 신규 교과목 개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과목의 내용을 1/3 이상 대체 하였을 때에 인정(명칭 변경만 한 것은 불인정, 전반적인 전공 교과과정 개편은 해당 안됨).
 - ② 연계/융합전공 개발: 학부제 교육의 일환으로 연계전공 개발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 모두 전공 당 1명 한도로 인정.
 - ③ Flipped learning 개발: 수업계획서, 수업 콘텐츠 및 수업진행 결과물이 블랙보드에 탑재된 경우에 인정.
 - ④ 강의용 홈페이지 개발: 사이버 캠퍼스 상의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 개발을 모두 포함 인정. 블랙보드 활용강의도 강의용 홈페이지 개발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강의자료의 주기적 탑재, 과제물, 공지사항, 질의응답, 그룹 활동, 성적관리 등의 활용 충실도를 평가하여 차등 인정할 수 있음.
 - ⑤ 강의노트 제작배포의 경우 확인이 어렵고 일상적 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제외함.
- 9) 강의코드: 융복합 교과목 분반티칭 주관교수 및 팀 강의 Coordinator 포함, 학기당 1과목만 인정.
- 10) 강의공개
 - ① 강의공개는 K-MOOC/G-MOOC과 KOCW로 구분하여 평가함.
 - ② 새로 공개한 강의에 대하여 동영상포함 강의인 경우와, 동영상미포함 강의로 구분하여 1과목당 점수를 부여함. 또한 공개되어 있는 강의를 공개 유지하는 경우 1건당 해당 점수의 (1/3)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③ 강의녹화 및 강의녹화공개: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에 준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인정하는 강의에 한함(학기당 10주 이상 녹화/공개 필요). 학점비중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녹화 및 공개 강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11) 교수역량개발
 - ① 교수법 워크숍 참여: 본부에서 지정한 연간 기본이수 교수법 워크숍을 초과한 교수법 워크숍에 한하여 배점한다. 연간 기본이수 교수법 워크숍 수강기준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 ② 강의능력개발 프로그램 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관련 프로그램 참가
 - ③ 수업컨설팅 참여: 30분 이상 강의녹화 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수업컨설팅을 받고 컨

선티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

12) 학생지도

- ① 학사지도 상담: 배정된 지도학생에 대한 상담 실적이 차세대시스템에 충실히 기재된 경우에 학생상담 2점 부여.
- ② 동아리 지도교수: 학생지원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만 1건 인정(단과대학 불인정). 동아리의 실질적인 지도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 ③ 교내·외 학생행사 현장지도: 학생지원처와 교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활동만 인정. 정규교과목 관련 행사의 경우 월/일, 교과목명칭, 지도 내용 등 기재하여 제출. 교내·외 학생 공식 학술행사 지도 및 각 학부(과)에서 주관하는 학술 및 경시대회 포함(현장지도가 정규 수업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함).
- ④ 해외연수/봉사 인솔지도: 해외연수는 MOU에 의한 국제학생교류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하며, 해외봉사는 학생지원처 또는 국제협력처의 확인에 의해 인정됨.
- ⑤ 교외봉사활동 인솔: 사회봉사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⑥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공모전 수상: 학생지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 공모전 상장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 당 1건 최대 2건 인정.
- ⑦ 기타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모전 지도, 특강, 수업 외 (과의) 전공 지도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별표 2> 연구영역 세부항목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및 인정점수		연간상한점수	비고		
2 연구	논문 (1편당)	국제	S Science, Nature, Cell (300점)	-	1-2,5)		
			A	A&HCI, SSCI (120점)		-	
				SCI (80점)			IF 상위 10% (120점)
							IF 상위 20% (100점)
			B SCI(E) (60점)	-			
			C SCOPUS (50점)	-			
	D 기타 국외학술지 (30점)	-					
	국내	A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0점)	-	1),3-5)			
		B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30점)	-				
		C 일반학술지 (20점)	-				
		D 교내논문집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 (15점) 1건만 인정	15				
	저서	국제 학술서	A 전공학술저서(초판) 1권 (150 페이지 이상) (80점)	-	5),6)		
			전공학술저서(초판) Chapter 1편 (25점)	-			
		B	전공학술저서(초판) 1권 (150 페이지 미만) (50점)	-			
			전공학술저서(초판) Chapter 1편 (15점)	-			
국내 학술서		A 전공학술저서(초판) 1권 (45점)	-				
		B 대학교재, 전공분야 교양서(초판) (30점)	-				
우수도서	문화관광부/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1권 (20점)	20					

번역서	학술서	외국어역 (30점)	-	
		국역 (15점)	-	
	대학교재(국역) (15점)	-		
학술 활동	국제 발표	학술발표 (10점)	-	
		기타발표(포스터, 심포지움, 세미나, 포럼) (5점)	-	
	국내 발표	학술발표 (6점)	-	
		기타발표(포스터, 심포지움, 세미나, 포럼) (3점)	-	
	학술상	국제 (20점)	20	7)
		국내 (10점)	10	
	기타 학술 활동	정기간행물(학술잡지, 일반잡지, 사보, 주요 일간지 포함) 게재 전공영역 기고문, 서평, 논평, 초청강연/강좌 (4점)	8	8)
예제능 분야 전시 공연 상영 및 설계 작품 - 별도 배점표에 의한 평가 적용		<별표 3> <별표 8>	9)	

1) 논문

- ① 모든 논문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있어야 하며 Article, Letter, Review에 한하여 인정한다. Letters to the editor, note의 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구논문 인정비율의 20% ~ 100%까지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학술지의 등급은 게재시점을 기준으로 그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국제 S급 및 국제 A급의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 승인시점에서는 해당 학술지가 상기 등급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문 게재시점에서는 해당 학술지가 상기 등급에서 탈락했다라도 상기 등급으로 인정한다.
 - ③ SCI급 논문은 Thomson Reuters사의 Journal Citation Reports(이하 “JCR”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Impact Factor(이하 “IF” 라 한다)값을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차등 배점하며, 분야별 IF 상위 10%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 점수의 1.5배, 상위 20%까지는 1.25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IF의 상위 백분율은 JCR의 학술지 범주 내에서 해당 학술지의 순위 백분율을 의미하며, 다수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범주별 백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IF는 논문게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 ④ 권, 호, 쪽수가 부여된 논문(온라인저널 논문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재예정인 논문도 온라인 DOI 번호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먼저 게재된 경우와 게재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해당논문은 차년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평가자는 추후 반드시 공식 게재된 논문실적자료를 평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논문의 저자 소속에 ‘수원대학교’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2) SCOPUS 등재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인정기준에 부합된 Document type만 인정한다.
 - 3) 국내 C 일반학술지: A, B급 국내 학술지 이외의 전국규모 학술단체에서 학술 논문만을 게재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 4) 국내 D 일반학술지: 교내 논문집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을 말하며,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5) 인정비율(전체 저자수에 교내·외 대학원생 모두 포함/소수 둘째자리로 반올림함)

- ① 논문
 논문저자 수가 2명 이상일 때, 저자 역할에 따라
 주저자, 교신저자, 주저자 이면서 교신저자일 때: $2/(n+1) \times 100\%$,
 공동저자 실적: $1/(n+1) \times 100\%$,
 ※ n(전체저자수)이 15명 이상일 경우 15로 인정
- ② 저서
 $1/n \times 100\%$ ※ n(전체저자수)이 10명 이상일 경우 10으로 인정
 ※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은 제외
- ③ 학술회의
 $1/n \times 100\%$
 ※ n(전체저자수)이 15명 이상일 경우 15로 인정
- 6) 대학교재, 전공분야 교양서를 제외한 국제학술서와 국내학술서는 각각 국제 및 국내 연구필수요건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저서는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나 창작집으로서 ISBN이 수록된 신규출판물(CD 등)을 말하며, 국제전공학술저서로써 150페이지 이상인 경우 국제A급, 150페이지 미만인 경우 국제B급, 국내전공학술저서는 국내A로 분류한다.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관계 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개정판은 인정하지 않으며, 2개 Chapter 이상의 내용이 개편된 개정증보판의 저자로 새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① 전공학술저서의 각 Chapter들이 서로 다른 저자들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Chapter에 대해서 저자 수에 따른 배점을 인정받으며, 저서 권당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문학전공 교원에 한하여 시, 소설, 평론, 희곡 등의 발표 또는 문예지 게재의 경우 학술발표로 인정하며 소설집, 시집, 희곡집, 평론집, 수필집 등 창작물(전공분야 단행본) 발간 시에는 저서로 인정한다.
- ③ 우수도서는 문화관광부 또는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저자의 경우 1권에 한하여 연구필수요건 국내A로 대체 인정한다.
- ④ 서평 및 해제,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 강의(연수)용 교재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7) 학술상은 국가 및 공공단체, 학술단체로부터 학술적인 업적 또는 우수성을 치하하는 수상에 한하여 인정한다.
- 8) 학술활동 기타는 정기 학술간행물(정기 학술 간행물, 일반잡지, 사보, 주요일간지 포함)에 게재된 전공분야의 기고문 및 초청강연강좌에 한하여 인정하며, 봉사영역의 매체활동과 중복평가인정을 받을 수 없다.
- 9) 예체능계열에 대한 연구영역 평가는 별도의 배점기준을 따르며, 세부항목별 기준은 <별표 3>-<별표 8>과 같다.
- 10) 연구실적이 표절로 판명되면 그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절에는 본인 업적표절과 타인의 업적표절을 포함하며 연구업적의 내용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른 학술지,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업적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서 상당부분 같으면 표절로 간주한다. 표절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심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동일한 연구업적물에 대하여는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 11) 외국인교수가 국내 및 본인의 국적지에서 연구업적(저서, 역서, 논문, 전시, 공연 등)을 한 경우는 국내실적으로 인정한다.
- 12) 연구업적물의 등급판정일은 연구업적물의 발행일이나 공연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하지 아니한다.
- 13)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별표 3> 예체능 - 미술실기 배점표

(단위 : 점)

평가 영역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연간 상한점수	비고	
				A	B			
2-1 연구 (미술실기)	전시	국제	기획, 초대전시		60	45	-	1),2)
			일반전시		45	34	-	
		국내	기획, 초대전시		45	34	-	
			일반전시		40	30	-	
	전시 기획	국제	전시기획 전시 총감독		60	45	-	1),2)
			전시기획 커미셔너, 큐레이터		40	30	-	
		국내	미술관 전시기획		40	30	-	
			기타 비상업적 전시기획		15	11	-	
	창작물	공공 조형물(1회 제한)			40		40	1),3)
	평론		국제 저명 미술 전문지 평론 및 전시 비평		40		-	4)
			국내 저명 미술 전문지 평론 및 전시 비평		20		-	
			국제 저명 미술 전문지 리뷰 및 프리뷰		20		-	
			국내 저명 미술 전문지 리뷰 및 프리뷰		15		-	
			기타 저널리즘에 발표한 평론 및 비평		10		-	
	공모전 수상	국제	최고상/대상		60		-	5)
			우수상, 금, 은, 동상		40		-	
			특선		20		-	
		국내	최고상/대상		40		-	
			우수상, 금, 은, 동상		20		-	
			특선		15		-	
수상	국제	디자인, 공예, 예술상		45		-	6)	
	국내	디자인, 공예, 예술상		40		-		

- 1)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A/B, 국내 A/B 공연발표전시장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후 반영할 수 있다.
- 2) 전시/전시기획
 - 국제 A등급 기준 :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Siggraph, ICOGRADA, ICSID 또는 G9 국가 전문 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 컬렉션(뉴욕, 동경, 파리, 밀라노, 영국)과 이에 준하는 전시회

- 국제 B등급 기준 : 시드니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화엔자 국제도예전, FIAC, LA 아트페어, 함브르크 아트페어, 바젤 아트페어, 쾰른 아트페어, 시카고 아트페어,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서울 국제 비엔날레, 부산 국제 비엔날레, 서울 국제패션아트 비엔날레, 키아프(KIAF), 홍콩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트페어, 찰스브루크 아트페어, S.O.F.A, 마이애미 아트페어, 로잔느 국제섬유비엔날레 또는 G9 국가 전문 갤러리 등에서 개최된 전시, 컬렉션과 이에 준하는 전시회
- 국내 A등급 기준 : 세종문화회관미술관, 한가람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일민미술관과 이에 준하는 미술관
- 국내 B등급 기준 : 한국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고운미술관 외 이에 준하는 미술전시장

3) 공공 조형물

- ① 미술장식품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작품
- ② 공인된 조각공원등 공공장소에 영구 설치된 작품
- ③ 심포지엄에 참가 제작하여 영구 설치된 작품

4) 평론: 미술·공예·디자인 전문매체 및 전문지에 평론 및 전시 비평한 실적

- ① 국제 : Art in America(미), Art News(미), I' art international(프), Flash Art(이탈리아), Art in Asia Pacific(호주), 美術手帖(일) 등 국제적으로 유명하며 영향력 있는 매체를 지칭하며, 여기에 영, 불, 독, 일어 등 외국어로 게재된 것으로서 영문기준 2,000자 이상 또는 비슷한 분량의 본격적인 비평문
- ② 국내 : 월간미술, 월간아트인컬처, 미술시대, 미술세계 등 미술만을 대상으로 한 매체에 발표한 이백자 원고지 20매 이상의 분량을 지닌 본격적 비평문

5) 공모전 수상

- ① 국제 : G9 국가에서 주최한 권위 있는 대전 및 공모전으로 6개국 이상 참여. 단, G9 국가 이외에서 개최한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 및 공모전, 전시회 등은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② 국내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KOSID대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전, 디자인분야연구, 대한민국디자인 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전. 단, 이외의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 및 공모전, 전시회 등은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6) 수상

- ① 국제 : 국외의 권위있는 단체로부터 수여받은 디자인·공예·예술상
- ② 국내 : 이중섭미술상, 월전미술상, 이당미술상, 하종현상, 김세중미술상, 문신미술상, 사단법인/학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갤러리 등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디자인·공예·예술상

7) 순회전시, 수상작품은 1건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회전시, 수상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평점을 받게 된 경우 가장 높은 업적만을 인정한다.

8) 동일한 내용의 작품전시는 1회로 간주한다.

9) 초대전 : 주최측에서 전시경비 일체를 제공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초대전 전시로서, 주최측의 초대전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전시만 인정한다.

10) 아트페어에서의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개최될 경우는 개인전으로 인정한다.

11) 개인전

① 단체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미술제 또는 전시회에서 내용적으로 개인전과 같은 규모는 개인전으로 인정하며, 기타 단체전의 성격을 보이면 초대 단체 전시로 인정함.

② 디자인 관련 학부(과)는 디자이너 이름이 공표되는 독립된 무대를 갖는 경우 개인전으로 인정함.

③ 온라인 전시는 전시분야 기준에 준하여 평가함.

12) 공공발표 창작물에 대한 인정범위

① 공공장소나 공인된 매체 등에 발표 또는 게재된 연구물, 창작품, 제품을 평가함.

② 창작품에 대한 평가는 실물사진, 영상매체 혹은 작품의 축척 등을 표시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이를 평가함.

13) 건축설계디자인전공은 <별표 4>의 배점 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예술계열 미술분야 전시부문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전시부문은 참여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산한다.

전시자수	1인	2인	단체(3인 이상)
환산율	100%	50%	30%

<별표 4> 건축설계디자인전공 배점표

(단위 : 점)

평가 영역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국제		국내		
			A	B	A	B	
2-2 연구 (건축 설계 디자인)	초대전	초대개인전	60	45	45	34	1)-5)
	일반전	일반개인전	45	34	40	30	1)-5)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작	60	40	40	20	6)
		입상작	20	10	15	10	
	전문지	작품게재	-	40	20	20	15
평론 및 비평		-	40	20	20	15	

1) 초대전은 주최측에서 전시장소와 전시비용 일체를 부담하였거나, 주최측에서 전시장소 및 전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공식적으로 초대한 경우에 한한다.

2) 초대전, 일반전, 공모전에서의 국제A급은 국제건축가연맹(UIA), 미국건축가협회(AIA),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서울 국제 비엔날레, 광주 국제 비엔날레, 세계조경연합회(IFLA), 미국조경가협회(ASLA)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공인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적 규모인 경우에 한한다.

3) 초대전, 일반전, 공모전에서의 국내A급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설계교수협의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언론사가 주최하는 우수한 갤러리, 법인단체, 또는 광역시, 도 이상의 정부부처 산하단체에서 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4) 초대전, 일반전, 공모전에서의 국제B급은 2)항의 경우를 제외한 국외 또는 국제적 규모인 경우

에 한한다.

- 5) 초대전, 일반전, 공모전에서의 국내B급은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단체에서 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 6) 설계사무실과 공동으로 공모전에 출품한 경우 설계사무실은 참여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7) 전문지 작품게재, 평론 및 비평에서 기사, 뉴스, 소식지 등에 소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전문지 작품게재, 평론 및 비평에서의 국제A급은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Digest, Architectural Aujourd, Domus, CACSABELLA, Space(공간),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전문잡지와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발행하는 국제 조경전문잡지에 기획 게재된 작품에 한한다.
- 9) 전문지 작품게재, 평론 및 비평에서의 국내A급은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건축세계, 건축사, 건축가, POAR, PLUS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전문잡지와 도시설계학회지, 환경과 조경에 기획 게재된 작품에 한한다.
- 10) 전문지 작품게재, 평론 및 비평에서의 국제B급은 8)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 건축 및 조경 전문잡지 등에 기획 게재된 작품에 한한다.
- 11) 전문지 작품게재, 평론 및 비평에서의 국내B급은 9)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디자인, 조경 혹은 예술관련 전문잡지에 기획 게재된 작품에 한한다.

[공학계열 분야 건축설계디자인 부문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전시부문은 참여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산한다.

전시자수	1인	2인	단체(3인 이상)
환산율	100%	50%	30%

<별표 5> 예체능 - 음악실기 배점표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배 점				연간상한점수	비고		
				국 제		국 내					
				A	B	A	B				
2-3 연구 (음악실기)	음악학부 공동	음반/ 악보출판	1인 음반 출간 / 악보 출판			40		-	1),2)		
			2인 공동 음반 출간 / 악보 출판			28		-			
			3인 이상 공동음반출간/ 악보 출판			20		-			
		수 상	공인된 국제 음악상			60		-			
			공인된 국내 음악상			40		-			
	기획	음악회 기획, 제작(1회 제한)			12		12				
	구분	작 곡	평가항목		배 점				연간상한점수	1),3)	
					국 제		국 내				
					A	B	A	B			
			오페라 및 발레 (2막 이상)		60	45	45	34	-		
오페라 및 발레 (1막)			60	45	40	30	-				
관현악/협주곡/음악극											
1인 작곡 발표회		45	34	28	21	-					
칸타타/합창곡/오라토리오/무지컬											

		5인 이상의 실내악곡						
		2인 작곡 발표회 / 연가곡						
		2인 이상 4인 이하의 실내악곡	40	30	24	18	-	
		중창곡						
		독주곡 / 영상음악 / 컴퓨터음악	40	30	20	15	-	
		가곡	23	17	12	9	-	
		편곡	12				-	
성 악		오페라 주연	60	45	40	30	-	1),3)
		오페라 조연	40	30	20	15	-	
		오라토리오 (전곡)	45	34	25	19	-	
		오라토리오 1/2이상	40	30	20	15	-	
		오페라/뮤지컬 연출	60	45	40	30	-	
		독창회	60	45	40	30	-	
		협연	40	30	20	15	-	
		2인 발표회	45	34	25	19	-	
		3인 발표회	40	30	20	15	-	
		4인 이상 발표회	23	17	15	11	-	
		합창지휘(전체)	40	30	20	15	-	
		합창출연	18	14	10	8	-	
피아노		독주회	60	45	40	30	-	1),3)
		오케스트라 협연 (전 악장)	45	34	25	19	-	
		단악장 협연	40	30	20	15	-	
		2인 발표회	45	34	25	19	-	
		3인 이상 발표회	23	17	15	11	-	
		실내악 전체 Program	45	34	25	19	-	
		실내악 전체 Program의 1/2이상연주	40	30	20	15	-	
		반주	전체프로그램	40	30	20	15	
일부프로그램	23	17	15	11	-			
관현악국	지휘	1인 전체 프로그램	60	45	40	30	-	1),3)
		1/2 이상 프로그램	45	34	25	19	-	
		1/2 미만 프로그램	23	17	15	11	-	
	독주회	60	45	40	30	-		
	전악장 협연 및 2인 발표회	45	34	25	19	-		
	단악장 협연 및 3인 음악회	40	30	20	15	-		
	4인이상 발표회	23	17	15	11	-		
	실내악	2중주~5중주 전체 프로그램	45	34	25	19	-	
		2중주 이상 실내악 1/2 이상 프로그램	40	30	20	15	-	
		2중주 이상 실내악 1 Stage	23	17	15	11	-	
오케스트라 객원 악장	18	14	10	8	-			

1) 국제 A/B, 국내 A/B 공연발표전시장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후 반영할 수 있다.

2) CD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① 연구실적으로 인정된 연주의 실황 녹음 CD
- ② CD 제작 전 1년 이내에 한 연주회와 50%이상 같은 프로그램인 CD(해당 연주와 중복 인정 불가)
- ③ 시판되지 않는 개인 홍보용 CD(시판용 바코드가 없는 CD)
- ④ 이미 녹음된 여러 자료를 수집 및 편집하여 CD로 제작한 경우

3) 작곡의 경우 초연창작곡을 발표했을 경우만 인정한다.

- ① 국제 A등급 기준 : 카네기 홀, 베를린 필하모니 홀, 링컨센터 홀, Aspen, 다름슈타트, ISCM 음악제, ACL 국제음악제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음악제,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빈 필하모니,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G9 국가의 전문공연장.
- ② 국제 B등급 기준 : G9 국가에서 개최된 국제 일반음악제(페스티벌)나 해외 일반도시의 메인 홀에서의 개최된 연주회 또는 발표회.
- ③ 국내 A등급 기준 : 예술의 전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싸이틀홀),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세종 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금호아트홀, 국립중앙극장, 충무아트홀, 호암아트홀, KBS홀, LG아트홀, 영산아트홀, 세라믹팔레스홀, 고양아람누리(아람 극장, 아람 음악당) 대전 예술의 전당(아트홀, 앙상블홀), 성남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 시어터), KT체임버홀, 국립국악원, SK아트리움(대공연장), 반석아트홀, 경기도문화의전당(행복한대극장, 아늑한소극장), 포은아트홀, 국립부산국악원(연악당) 등 이에 준하는 국내 공연장, 벨칸토 아트센터
- ④ 국내 B등급 기준 :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

<별표 6> 예체능 - 공연실기 배점표

(단위 : 점)

평가 영역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연간 상한점수	비고	
				A	B			
2-4 연구 (연극 · 무용 실기)	연극 무용 (공통)	창작 (단독)	연극연출, 연극극작, 무용안무, 공연제작총괄	국제	60	45	-	1)-5)
				국내	45	34	-	
		출연 (단독)	주연급	국제	45	34	-	
				국내	40	30	-	
		디자인/ 기술/ 기획 (단독)	디자인분야 (세트, 조명, 무대의상 디자인) 무대기술분야 (음향, 소품디자인, 기술/무대감독) 기획분야 (제작, 홍보, 마케팅)	국제	45	34	-	
				국내	40	30	-	
		공연행사 (단독)	공인된 연극제/무용제 예술감독/총연출	국제	60	45	-	
				국내	40	30	-	
		공동작업	공연제작/연출/안무/출연/디자인/출판	국제	60	45	-	
				국내	40	30	-	
평론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및 공연비평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프리뷰	국제	40		-	6)-8)		
		국제	20		-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및 공연비평	국내	20	-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프리뷰		15	-	
	수상	공연/무용/무대디자인관련 예술상	국제	60	-		
			국내	40	-		
연극	창작	출판이나 제작된 희곡, 시나리오(장편)	국제	60	45	-	1)-3),9)
			국내	45	34	-	
		출판이나 제작된 희곡, 시나리오(단편)	국제	40	30	-	
			국내	30	23	-	
		희곡, 시나리오 번역 및 각색, 드라마투르기	국제	40	30	-	
			국내	30	23	-	
	출연	조연급	국제	40	30	-	
			국내	30	23	-	
	무대 디자인 및 기술 스태프	초대전시	국제	60	-	1)-3), 10)-11)	
				45	-		
			국내	45	-		
				40	-		
전시기획 총감독		국제	60	-			
		40	-				
전시기획 커미셔너, 큐레이터		국내	30	-			
			30	-			
공모전 수상		최고상/대상	국제	60	-		
				40	-		
	우수상, 금, 은, 동상	국내	40	-			
			30	-			
	특선	국제	20	-			
			15	-			
무용	스태프 참여	예술 감독, 대본, 연출, 기획	국제	20	15	-	1),4)-5), 12)
			국내	15	11	-	
	안무	단독	국제	20	15	-	
			국내	15	11	-	
		2인 이상	국제	15	11	-	
			국내	10	8	-	
	출연	주연급	국제	15	11	-	
			국내	10	8	-	
		조연급	국제	10	8	-	
			국내	5	4	-	
예술 감독, 대본, 연출, 기획	국제	15	11	-			
	국내	10	8	-			

1)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A/B, 국내 A/B 공연발표전시장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후 반영할 수 있다.

2) 국제(국외) 연극제

- 국제 A등급 기준 : 아비뇽 국제연극제, ITI Theatre of Nations 연극제, 에딘버러 연극제, 스트라트포드 연극제, 더블린 연극제, 런던 국제 연극제, 모스크바 국제 연극제, 싱가포르 국제 연극제, 상해 아트 페스티벌, 카이로 연극제, 링컨센터 공연, 바비칸센터, 베

세토 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이에 준하는 국제 연극제

- 국제 B등급 기준 : G9 국가에서 개최된 국제 연극제 및 이에 준하는 연극제

3) 국내 연극제

- 국내 A등급 기준 : 서울연극제, 전국연극제, 의정부음악극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춘천국제연극제, 현대극페스티벌, 마산국제연극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과천마당극축제, 남양주야외공연축제,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바다연극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 이에 준하는 국내 연극제, 벨칸토아트센터, 국립극단, 시·도립극단
- 국내 B등급 기준 : 국내 A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연극제 또는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

4) 국제(국외) 무용제 :

- 국제 A등급 기준 : 국제행사(무용제, 콩쿨)는 5개국 이상이 참여한 행사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한 경우에 한함
- 국제 B등급 기준 : G9 국가에서 개최된 국제 무용제 및 이에 준하는 무용제

5) 국내 무용제 :

- 국내 A등급 기준 : 국내 무용제는 서울무용제, 전국무용제 등 10년 이상의 전통을 갖는 공인된 무용제에 한함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용극장, 유니버설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국립국악원과 광역시·도 전문공연장, 벨칸토아트센터
- 국내 B등급 기준 :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
국내 무용 콩쿨은 각 무용협회 주최 콩쿨, 각 신문사 주최 콩쿨, 대학 무용 콩쿨 등 공인된 콩쿨에 한함

6) 국제/국외 평론 :

The Drama Review, Theatre Quarterly, Comparative Drama, Asian Theatre Journal / Dance Europe, Dance Magazine, Dance Spirit, Ballet Tanz, Dance Current, Dance Art / TD&T, TCI, MIX, Lightin Dimension, LDI, Live Design, Theater Heute, Oper Welt 등 국제적으로 유명하며 영향력 있는 매체를 지칭하며, 여기에 영, 불, 독,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게재된 것으로서 영문기준 4,000자 이상 또는 비슷한 분량의 본격적인 비평문을 말한다.

7) 국내 평론 :

한국연극, 공연과 이론, 연극평론, 공연과 리뷰/댄스포럼, 춤과 사람들, 춤, 몸, 객석/한국무대미술리뷰, The Staff 등 전공분야 별로 인정되는 전문지로서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의 비평문을 말한다.

- 8) 수상 : 국내외의 권위있는 공인 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공연/무용/무대디자인 관련 예술상을 의미한다.

9) 국제(국외) 및 국내 창작 :

- ① 국제/국외 및 국내 희곡 및 시나리오는 영, 불, 독,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게재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

서번호 ISBN)이 있는 서적 혹은 CD 등이며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② 희곡의 경우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공연 제작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인정율의 50%를 인정한다.

10) 무대디자인 및 기술·스태프 분야 전시/ 국제

프라하 쿼드레날레(Prague Quadrennial), 미국 무대기술협회(USITT:United State Institute of Theater Technology), WSD (World Stage Design) 등 세계무대미술, 기술 및 건축가협회(OISTAT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cenographers, Theatre Architects and Technicians) 등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

11) 무대디자인 및 기술·스태프 분야 전시/ 국내

- ① 한국무대미술가협회, 무대예술전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전시
- ② 공인된 미술관 및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언론사 및 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전시
- ③ 정부관련 부처 및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및 협회등이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전시
- ④ 단체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시회 또는 예술제에서 내용적으로 개인전과 같은 규모는 개인전으로 인정
- ⑤ 무대디자인에 관한 국, 내외 전시는 디자인 및 미술 분야의 전시에 준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12) 동일 작품에서 연출, 디자인, 제작 등의 다역을 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단, 연극제 수상 및 초청은 별도 반영한다.

13) 순회공연, 수상작품은 1건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평가연도에 동일업적이 순회공연, 수상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평점을 받게 된 경우 가장 높은 업적만을 인정한다.

14) 재공연은 1년 이내는 50%, 1년 이후에는 100% 인정한다.

15)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내용의 일련된 연주, 발표, 공연은 1회로 간주한다.

16) 30분미만의 작품(창작, 출연, 디자인 및 기술·스태프 공통)은 50%만 인정한다.

17) 무대디자인 분야의 전시기획은 미술 분야의 전시기획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18) 공모전 수상 : 국내외의 공인된 공모전에서 수상한 실적

19)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예체능계열 연극/무용분야 창작, 출연 및 전시부문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연극/무용계열 창작, 출연 및 전시부문 업적확인 및 평가 시 적용될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전시자수	1인	2인	단체(3인 이상)
환산율	100%	50%	30%

<별표 7> 예체능 - 영화실기 배점표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배점		연간 상한점수	비고
						A	B		
2-5 연구 (영화 실기)	영화	제작	연출	영화	TV 콘텐츠	90분 이상	60	-	1)
					장편영화	40분 이상			
					단편영화	40분 미만			
				TV	TV 콘텐츠	40-90분 미만	45	-	
						40분 미만	30	-	
						교육, 홍보물, CF, 디지털미디어	60분 이상	40	
					30-60분 미만	30	-		
					30분 미만	20	-		
			기획, 프로듀서 , 시나리오	영화	TV콘텐츠	90분 이상	60	-	
					장편영화	40분 이상			
					단편영화	40분 미만			
				TV	TV 콘텐츠	40-90분 미만	30	-	
		40분 미만				18	-		
		교육, 홍보물, CF, 디지털미디어				60분 이상	20	-	
				30-60분 미만	15	-			
				30분 미만	10	-			
		촬영	영화	TV콘텐츠	90분 이상	40	-		
				장편영화	40분 이상				
				단편영화	40분 미만			30	
			TV	TV 콘텐츠	40-90분 미만	30	-		
					40분 미만	20	-		
					교육, 홍보물, CF, 디지털미디어	60분 이상	30	-	
					30-60분 미만	20	-		
					30분 미만	15	-		
조명 편집	영화		TV콘텐츠	90분 이상	30	-			
			장편영화	40분 이상					
			단편영화	40분 미만			20		
	TV		TV 콘텐츠	40-90분 미만	30	-			
		40분 미만		18	-				
		교육, 홍보물, CF, 디지털미디어		60분 이상	20	-			
		30-60분 미만	15	-					
		30분 미만	10	-					
분야		평가항목				배 점		연간 상한점수	비고
					A	B			
영화	영화제 상영	국제 영화제				60	45	-	1),2)-4)
		국내 영화제				40	30	-	
	공동 작업	해외단체와의 작업 (제작, 기획, 연출, 시나리오분야)				40	30	-	1)
		해외단체와의 작업 (촬영, 조명, 음향, 편집 등 기술분야)				30	23	-	
	수상	국제	저명 영화제 최고상				60	45	-
			저명 영화제 우수상 및 각 부문상				40	30	-
		국내	공인 영화제 최고상				40	30	-
			공인 영화제 우수상 및 각 부문상				30	23	-
	기타	영화관련 방송프로그램 고정진행				20		-	
		영화관련 방송프로그램 고정출연				15		-	
평론	국제	영화전문지 평론 및 작품비평				40		-	

		영화전문지 리뷰, 프리뷰	20	-
	국내	영화전문지 평론 및 작품비평	30	-
		영화전문지 리뷰, 프리뷰	18	-
		기타 저널리즘 발표 평론 및 비평	15	-

- 1) 국제 A/B, 국내 A/B 공연발표전시장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후 반영할 수 있다.
- 2) 영화제 상영의 경우(가, 나, 다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
 - 국제 A등급 기준 : 가. 아카데미영화제,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국제충무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토론토영화제 등 이에 준하는 영화제
 - 나. 9개국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 영화제
 - 국제 B등급 기준 : 가. 국제 A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화제
 - 나. 5개국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 영화제
 - 국내 A등급 기준 : 가. 대중상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상,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 서울독립영화제 등 이에 준하는 영화제
 - 나. 60편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 영화제
 - 국내 B등급 기준 : 가. 국내 A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화제
- 3) 위 기준은 작품제작을 제외한 항목에는 극장 상영을 장편 및 단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위 기준의 작품 및 작품 참여는 작품이 완성되어 발표한 것을 의미한다. 단, 시나리오의 경우 계약서 등을 근거로 영화제작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준인정율의 50%를 인정할 수 있다.
- 5) 장편의 기준은 국내 영화진흥법 기준에 따라 40분으로 한다. 시나리오 각색의 경우 시나리오 전공인정율의 80%를 인정한다.
- 6) 동일 작품 제작시 둘 이상의 작업에 참여한 경우 합산하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7) 국제 저명영화전문지는 Première(프), Cahier du cinéma(프), L'Avant-Scène(프), Premiere(미), American Cinematographer(미), Sight and Sound(영) 등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매체를 지칭하며 여기에 영, 프, 독, 일어 등 외국어로 게재된 것으로서 영문기준 4,000자 이상 또는 비슷한 분량의 본격적인 비평문을 말한다.
- 8) 국내 저명 영화전문지는 씨네21 등을 말한다.
- 9) 비상영 및 비공연 작품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10)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예체능계열 영화분야 제작부문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

※ 영화분야의 공동제작에 대한 배점은 다음의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전시자수	1인	2인	단체(3인 이상)
환산율	100%	50%	30%

<별표 8> 예체능 - 체육실기 배점표

(단위 : 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연간 상한점수	비고
2-6 연구 (체육실기)	경기 참가	단장, 감독, 코치, 심판, 출전	국제 대회	올림픽경기대회	60	-	1)-2)
				세계선수권대회	45	-	
				유니버시아드 대회	40	-	
				아시아경기대회	35	-	
				아시아선수권대회	30	-	
			세계청소년대회	25	-		
			국내 대회	전국체육대회	30	-	
			종목별전국대회	25	-		
	자격	심판취득	공인된 국제 심판(1회에 한함)		45	45	1),3)-4)
			공인된 국내 심판(1회에 한함)		40	40	
	발표	공인된 체육단체	국제단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45	-	1)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0	-	
				종목별국제경기단체	30	-	
		개인연구	국내단체	대한체육회	30	-	
				대한올림픽위원회	30	-	
상훈	체육관련 수상	국제기구 수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60	-	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	-		
			종목별 국제경기단체	40	-		
		국내기구 수상	대통령 및 국가기관	30	-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25	-		

- 1) 평가항목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후 반영할 수 있다.
- 2) 올림픽 출전은 본인이 직접 선수로 참가한 것을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3) 국제 공인심판자격은 국제경기연맹 산하단체에서 자격을 획득하고, 대한 체육회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 4) 국제 및 국내심판은 1회에 한한다.
- 5) 전국체육대회 입상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의 경기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우
- 6)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참가, 취득, 발표,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7)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별표 9> 산학협력영역 세부항목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연간상한점수	비고	
3 산학협력	산학 연구 활동	지적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 단독 = 80점, 공동 = 80점×1/n 특허이외 소유권 : 단독 = 20점, 공동 = 20점×1/n	-	1)-2)
			국내특허 등록 : 단독 = 40점, 공동 = 40점×1/n 특허이외 소유권 : 단독 = 15점, 공동 = 15점×1/n	-	
		외부연구비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과제만 인정(연구비중개포함) 1) 인문/예체능계열 (점수=외부 연구비/ 65만원) 2) 자연계열 (점수=외부 연구비/ 125만원)	-	1),3)
		기술이전	지적재산의 외부 기술이전을 통해 학교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1) 인문/예체능 - 기술이전 수입액/25만원 2) 자연계열 - 기술이전 수입액/50만원	-	
		교원창업	교원창업 또는 학교기업 설립 (30점)	30	
		신기술,제품인증	정부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 (10점)	20	5)
		정부기관, 공공단체 및 산업체지원 사업/센터 유치 및 운영 (점수=연간 사업유치금액/250만원)	-	1),6)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1건당 점수=기업 총투자금액/1천만원)	30	7)	
	산학 교육 활동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	업체 발굴 인턴십 유치 (건당 3점)	-	8)
			현장실습(방문교육)(건당 3점)	-	
			취업연계 (건당 5점)	-	
		캡스톤디자인 지도	대회참가: 3점/팀	20	9)
			대회수상: 교내-5점/팀, 교외-10점/팀		
		산학연계 인력양성	산업체 계약형 전공개발 및 주관 (20점/건)	-	10)
			산업체 계약형 전공 신규교과목 개발 (10점/건)	-	
			산업체 위탁 프로그램 개발 (5점/건)	-	
			산업체 재교육 과정 유치 (20점)	-	
			산업체 방문특강 (건당 2점)	4	
		학생창업지원	창업강좌운영(비교과) (건당 10점)	20	12)
			학생창업 (건당 10점)	-	1),12)
			학생창업지도 (건당 3점)	6	12)
		취/창업 진로지도	학부(과)별 취업률	15	13)
			취/창업전담교수 (건당 7점)	7	14)
취업정보처 프로그램 추천 (건당 1점)	5		15)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학기당 2점)	6		16)		
학생창업경진대회지도 (팀당 3점)	6		17)		
취업알선 (건당 5점)	-		1),18)		
1교수 5제자(건당 6점)	30		19)		
1교수 5제자(건당 6점)	30		19)		
산학 봉사 활동	가족회사 유치관리	신규체결 (3-5점)	20	20)	
		관리활동 (5점)	-		
	산학협력활동	기술·경영·디자인 지도 (건당 2점)	20	21)	
	산업체파견활동	파견기간에 따라 4-8점 부여함	8	22)	
	학생취업관련 봉사	기업체 방문 취업홍보 (건당 1점) 기업체 MOU 체결 (건당 2점)	20	23)	

1) 지적재산권, 외부연구비, 기술이전, 정부기관 공공단체 및 산업체지원 사업/센터 유치 및

운영, 교원창업, 학생창업, 취업알선 관련 실적에 따른 취득점수는 연구필수요건 논문점수 국제A-SCI급 단독저자 0.7편 이하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① 특허 : 신청시점이 아닌 등록이 완료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직무발명 등에 의하여 해당교원이 발명자 혹은 고안자로서 학교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국제특허는 G7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특허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교외 연구비 및 기술이전 실적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과제만 인정한다.

① 외부연구비: 평가년도 본교 입금(산업자문료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대학 교수의 외부 연구비 수주를 증개한 실적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발부한 확인서를 통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비 수주가 공동연구인 경우 논문인정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연구 책임자는 10%를 가산한다.

② 기술이전: 특허, 노하우 등 지적재산의 외부기술 이전을 통해 학교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정, 평가금액은 각 교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교원창업은 교원명의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생창업과 공동명의로인 경우 학생창업실적과 중복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산업체파견활동으로 교원 본인의 창업회사로 산업체파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신기술, 제품인증은 해당 교원이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6)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협회의 산업체 지원 사업을 유치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유치 또는 운영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여 배점하되, 연간 유치금액을 기준으로 기여도의 합이 100이 되도록 배점한다.

7)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센터) 유치.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센터) 유치 실적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센터) 유치 관련 계약서 등으로 최초 계약년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업의 총 투자금액 매 1,000만원마다 1점을 배점한다.

8) 현장실습·인턴십지도

① 현장실습·인턴십지도 실적(업체발굴, 방문지도, 취업연계)은 본교 산학교육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처 등 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② ‘업체발굴’은 본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을 섭외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③ 현장실습(방문지도)는 관련부서에서 현장실습(교육)으로 접수된 과목에 한하여 실습기관을 섭외한 교원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교원의 소속전공(교양과목은 강의과목 관련) 학생만을 지도한 경우에 1인당 점수를 인정한다. 공동참여 2인 이상일 경우 인정비율 : $1/n \times 100\%$

가. 실습기관별 소속전공 학생 3명까지만 실적을 인정한다.

나. 실습지도와 관련된 출장지도보고서, 현지방문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취업연계’는 해당 교원이 섭외한 실습기관에서 교원의 소속전공(교양과목은 강의과목 관련) 학생이 실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점수를 인정한다,

- 9) 캡스톤디자인 지도는 본교 산학교육지원센터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한 설계물 경진대회의 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상은 교내수상, 대외수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① 교내의 경진대회인 ‘교내수상’은 각 경진대회별 제출 작품수의 최대 10% 이내 까지만 수상을 선정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
 - ② 교내수상 증빙은 각 제출작품수와 수상 내역을 필히 증빙하여야 한다.
- 10) 산업체 계약형 전공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산업체 위탁 프로그램 개발, 산업체 재교육 과정은 산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11) 산업체방문특강: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대학교에서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산업체와 단체에서 강연, 방문 특강을 한 경우 인정하되 강연기관이나 단체와 횟수에 따라 2점 배점함.
- 12) 학생창업지원 강좌운영 및 창업지도 실적은 다음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① ‘창업강좌운영(비교과)’은 창업관련 강좌를 운영한 실적에 한하여 1강좌당 점수를 인정하며, 창업강좌운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 ② ‘학생창업’은 교원 지도 학생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1회사당 인정을 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또한 학생과 교원이 공동창업한 경우에는 산학영역 연구활동의 교원창업 평가항목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학생창업지도’는 학생창업지도 내용을 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취업률 : 별도의 학부(과)별 취업률 계산방식에 따른다.
- 14) 취/창업전담교수 : 취업정보처 또는 창업지원단에서 임명하고 각 학부(과)별 취/창업상담 및 진로지도, 취/창업관련 행사기획 등을 진행한 교수. (단, 취업정보처 또는 창업지원단에서 임명받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활동이 미비하여 취업정보처 또는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15) 취업정보처 프로그램 추천 : 증빙자료를 작성 후 취업정보처에 제출(단, 취업정보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점 부여)
- 16)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 증빙자료를 작성 후 취업정보처 또는 창업지원단에 제출(단, 취업정보처 또는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 17) 학생창업경진대회지도는 경진대회 참가증빙을 해야 한다.
- 18) 취업알선의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관계사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및 취업알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9) 1교수 5제자의 취업실적에 따라 취업정보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0) 가족회사 : 우리 대학교와 가족회사 협정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사항을 시행한 경우 인정함.
- ① 가족회사와의 협약인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 매출액을 공동참여인원으로 나누어 배점함.
 - 1,000억원 이상 : 5점
 - 1,000억원 미만 : 3점
 - ② 가족회사 관리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사항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5점 배점.

- 21) 기술·경영·디자인 지도 : 기술지도보고서(업체와 산학협력단 확인)를 제출하는 경우 2점 배점
- 22) 산학봉사관련 산업체 파견활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대학교에서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기업체 등에 파견되어 활동한 경우 인정함.
 - ① 6개월 미만 : 4점
 - ② 6개월 이상 : 8점
- 23) 기업체 방문 취업홍보 : 포탈시스템 교직원자료실에 탑재된 기업체 방문 계획서 양식 및 기업체 방문 결과보고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단, 취업정보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점 부여), 기업체 MOU 체결(단,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 24)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별표 10> 봉사영역 세부항목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연간상한점수	비고		
4 봉사	교내 봉사	행정	교무위원 (건당 40점)	1건만 인정	40	1)	
			대학원장, 부설교육기관장 및 본부 부처장(차장) (건당 30점)		30		
			대학(원)주임교수 및 학부(과)장, 행정과장 (건당 20점)		20		
			본부주관 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학차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의 운영과 참여 (1-20점), T/F 위원 대학본부 각종 위원회 (건당 1-5점)		40		
	교내 봉사	기부/ 기부유치	학교발전기금유치(장학기금/현물 포함)		20	2)	
			- 3억 이상(20점) - 2억 이상 ~ 3억 미만(18점) - 1억 이상 ~ 2억 미만(16점) -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14점)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2점) - 1천5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10점) - 8백만원 이상 ~ 1천5백만원 미만(8점) - 3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6점) - 3백만원 미만(2점)				
	교내 봉사	수상 및 공훈	교외	공공기관(건당 15점) 1건만 인정	근속상 및 임원직 수행, 공로상 제외	15	
			교내	기타 (총장 및 이사장 포상) (건당 6점)		6	
	교외 봉사	학회 및 학술봉사	학회회장(건당 6점)		1건만 인정	6	
			학회임원, 편집위원(건당 4점)				
전국규모 학술회의의 좌장, 토론(건당 1점)			4				
국제학술회의의 좌장, 토론(건당 2점)		8					
학회		국제학회: 준비위원장 5점/준비위원 2점		10			
교내유치		국내학회: 준비위원장 3점/준비위원 1점		6			
사회봉사	중앙정부기관의 정책자문 (건당 3점)		3	3),4)			

		교육·사회·문화단체장 및 이사(전국규모) 중앙정부 주최 전국 규모 심사위원 중앙매체(일간지, 방송국) 해설, 논설위원	1건만 인정										
		중앙정부의 승진·자격·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 강연 (건당 2점)		2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자문위원 승진·자격·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 공공기관의 도서 심의위원, 봉사단체봉사 외부 강연(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봉사단체 임원	(건당 2점) 1건만 인정	2									
		매체 활동	전국규모 매체활동(KBS, MBC, SBS, 중앙일간지) (건당 3점)	12	5)								
			비정기학술간행물 및 지방지 기고, 기타 매체 출연(EBS, 지방방송국, 케이블TV) (건당 2점)	6									
위원회 평가	특별한 봉사활동		40	6)									
4-1 교육 활동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비고					
	학사관리 의 성실도 (10)	책임시수 미달, 강의계획 무단변경, 업적평가자료 허위제출, 업 적평가자료 기간 내 미제출, 허가를 받지 않은 타교 출강 및 해외 출강, 성적평가표 기간 내 미제출, 출석부 기간 내 미제 출, 무단 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강의계획서 기간 내 미 제출, 연구과제 정산서 기간 내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1 회당 2점씩 감점됨					10						
	징계	<별표 11>의 징계 평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						
	구분	평가항목					A	B	C	D	E	상한점수	비고
	근무 성실도 평가 (10)	학생지도 및 소통 노력										2	7)
		동료 교직원과의 인화와 협업										2	
학부(과) 발전 기여도										2			
학교 발전 기여도										2			
복무규정 준수와 교육자로서의 근무태도										2			
<별표 12>의 근무성실도평가 기준표를 작성 후 적용한다.													

- 1) 대학의 주요 보직 봉사 및 본부주관사업, 위원회, T/F팀 참여에 부여되는 점수는 연구필
수요건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교내봉사의 행정직책이 다수일 경우 상위 직책 하나만
인정하며, 본부주관사업 및 위원회, T/F팀 봉사 평가점수는 봉사기여도에 따라 차등 평
가하되 상한점수(40점)의 제한을 받는다. 기여도 평가는 해당사업이나 위원회 책임자의
평가(활동자료-회의록 등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다.
- 2) 기부유치(현물포함)은 국내외 단체(기업)나 개인으로부터 우리대학의 발전기금(장학기금
포함)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원이 대상이며 본 대학 발전기금 관련부서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인정범위는 해당연도에 실제 현금이나 현물로 입금 완
료된 경우에 한하며 본인이 직접 발전기금을 기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증 약정
서는 인정하지 않음) ※ 유가증권이나 토지, 건물 등은 기증 당시 평가액수에 의한다.
- 3) 교외봉사의 동일 기관(단체) 활동의 경우 연간 1건(1회성 활동은 50%만 인정하며 2회 이
상 활동시 100%)만 인정한다.

- 4) 기업체 활동, 외부대학 강의, 각종 논문심사, 타대학 입학시험 심사, 대학내 학회임원, 동문회, 종교단체 성격의 임원 등은 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 5) 매체활동봉사는 수원대 교원임을 밝혀야만 인정하며 (신문의 독자란 투고, 방송출연에서의 1회성 인터뷰 제외).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 연구영역의 학술활동과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 6) 특별한 봉사활동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대학의 발전 및 공로에 대해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7) 교육활동부문의 근무성실도평가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으로 하며, 평점은 각각 2점, 1.6점, 1.2점, 0.8점, 0.4점으로 함.
 - 근무성실도평가는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대학 및 학과발전을 위한 노력, 학사운영에의 참여 및 협력, 학교 경영 참여도 및 건학이념구현노력 등에 대해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 및 배점은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단과대학장(대학원장) 1인, 기획실장, 교무입학처장, 연구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 단장 중 1인, 학부(과)장 또는 소속 학과 교원 등 유관학과 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인, 및 근속 5년 이상 직원 1인으로 하며 배점은 40%, 15%, 15%, 30%으로 한다.
- ② 보직교원 중 대학원장, 학장, 처/실장, 부처장 및 차장의 경우 반드시 부총장이 평가하며 배점은 40%, 학장 및 중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인이 각 15%, 학부(과)장 중 1인 30%로 한다.
- ③ 최종종합평점이 7.5점에 미달하거나 D(미흡)등급 이하가 2개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부총장의 경우 보직 재직중 근무성실도 평가는 유예한다.
- 8) 모든 봉사업적은 본인이 기록한 사항 중 증빙서류(활동 기간명기)가 있는 건만 인정하고 그 외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활동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미만은 50%만 인정하고 증빙자료에 다년간의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매년 업적을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상기 항목 중 연구 및 교육부문 업적으로 활용한 항목은 봉사부문에서 재사용할 수 없다.
- 10) 전산상 자동 입력되지 않은 봉사활동은 본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하다.
- 11) 기타 특수한 상황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별표 11> 징계 평정 기준표

구분	항목	점수	비고
징 계	정직/강등	15	
	감봉/견책	10	
	시말서/경위서	6	

<별표 12> 근무성실도평가 기준표

근무성실도평가 기준표

기 간:

근무성실도평가 대상교원					
소속:	직급:	성명:			
평가위원 평가					
평 가 항 목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학생지도 및 소통 노력					
동료 교직원과의 인화와 협업					
학부(과) 발전 기여도					
학교 발전기여도					
복무규정 준수와 교육자로서의 근무태도					
총 평점 평균	/ 10점				
평가 기준					
(1) 매우 우수는 2점, 우수는 1.6점, 보통은 1.2점, 미흡은 0.8점, 매우 미흡은 0.4점.					
(2) 총 평균 평점 7.5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함.					
평가자 의견:					
평 가 위 원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평가기간은 적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하반기 전임교원
업적평가와 2008년 상반기 전임교원 업적평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9년 상반기 전임교원
업적평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년 상반기 전임교원
업적평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년 상반기 전임교원
업적평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